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3 선고 2018가단515557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1. 9.

판결 선고 2018. 1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,976,055원 및 그 중 8,452,418원에 대하여 2018. 6. 13.부터 2018. 7. 1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8. 10. 11.까지는 연 7.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영희

별지